

October 15, 2026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

I.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6 년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년경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약 1,761 억 원의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고 810 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회생법원의 직권 촉탁에 따라 이에 관한 자본증가 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회생법원은 위 각 등기가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임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별도의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 위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자본금증가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촉탁 등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를 다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법 시행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여전히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원고에게 위 소급적용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BKL의 대응

BKL 은 원고를 대리하여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의 관계 및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와 부칙의 소급적용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인가된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아래 사정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 (i) 개정 지방세법 부칙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별도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 종결 여부만을 기준으로 소급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 (ii) 행정안전부 역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해석한 점
- (iii) 원고의 회생계획기간이 개정 지방세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았고 미확정 회생채권에 관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이었던 점

나아가 BKL 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회생법원·행정안전부 및 과세관청의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관행과 신뢰보호, 실질과세원칙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들어 본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2023. 12. 29. 법률 제 19860 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개정 지방세법") 제 26 조 제 2 항 제 1 호와 그 부칙 제 3 조가 정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①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회생계획 수행 완료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언·제도적 정합성, ② 구 지방세법 단서 규정 신설(2016 년 시행) 이후 8 년 만에 다시 전면 비과세로 회귀한 입법 경위 및 형평성 고려, ③ 개정 지방세법의 제안 부처인 행정안전부 스스로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나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개정규정 시행일에 수행 중인 경우"를 소급적용 대상으로 유권해석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당시 원고는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나 여전히 회생계획을 수행 중이었으므로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는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어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므로, 피고의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시사점

지방세법은 2015 년 개정을 통해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 중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2023. 12. 29. 개정을 통해 8 년 만에 다시 회생법원 축락등기 전부를 비과세 대상으로 환원하면서 그 부칙에 소급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위 부칙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회생계획의 완전한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특성과 개정취지를 근거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여전히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대하여도 개정 지방세법 부칙조항의 적용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BKL 은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회생기업에 예기치 못한 조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아 회생기업의 정상화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대상판결과 유사한 쟁점의 사건이 법원에 다수 계류 중이었고 하급심 판결도 엇갈리던 상황이었으나, BKL 은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와 부칙상 소급적용 규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과세처분의 실체적 위법 사유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과세처분 전부 취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소송 전략은 BKL 조세그룹의 조일영 변호사와 조무연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최은정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맡아 헌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구성원

조일영

변호사

T 02.3404.0545

E ilyoung.cho@bkl.co.kr

조무연

변호사

T 02.3404.0459

E mooyoun.cho@bkl.co.kr

본 Legal Update는 최은정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